

#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1.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 2015-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 〈주문〉

中都日報 2015년 1월 12일자 7면 「서산의료원 前직원 시신 발견/공보의 부당수급 감사·조사 여론/일부 노조 침묵에 원망의 목소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산의료원장에 대한 불만 제기 및 노인전문 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던 최모씨가 결국 6일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씨는 지난 5일 행방을 감춘채 서울과 예산등지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생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경찰과 직원들이 백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결국 10일 오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서 싸늘하게 죽은 채 발견됐다.

최씨는 ‘결제를 받기가 힘들어 도저히 못살겠다’, ‘더 버틸 자신이 없다’며 원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온 내용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최씨처럼 원장과의 업무 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장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번 원장실에 불러 올라가면 1~2시간은 보통이고 심지어 두세시간씩 업무와 관련 없는 온갖 호통과 폭언을 듣고 나면 요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몸이 불편한 직원이나 임산부들까지도 장시간씩 세워놓고 훈계를 하는 등 정황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직원을 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자로서의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보의들이 근무하지도 않은 수당지급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감사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수역원의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했다면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심을 쓰듯 선심성으로 지출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같은 원장의 경영행태에 대해 견제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어야 할 노동조합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침묵을 해 온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 직원들간에 원망의 목소리 마저 일고 있어 이번 기회에 서산의료원이 여러측면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1110227](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11102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컴퓨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행방을 감춘서산의료원 직원 최 모 씨(37)가 잠적 6일 만인 지난 1월 10일 고향인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속보성 스트레이트 기사다.

中都日報는 위 기사보다 나흘 앞선 1월 8일자 신문에 최 씨의 잠적 사실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가족들에게 '결재 받기 힘들어 도저히 못살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 같은 유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中都日報는 관련사건 첫 속보인 위 기사에서는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를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간단하게 전한 뒤

서산의료원장을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비판·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기사는 최 씨의 유서에서 '결재 받기 힘들어 도저히 못살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대목에 대해 『원장으로 인해 하루 하루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 온 내용』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기사는 또 『몸이 불편한 직원이나 임산부들까지도 장시간씩 세워놓고 훈계를 하는 등 정황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직원을 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자로서의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등 장황하게 의료원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 대부분은 '알려지고' '제기되고' 등 간접인용 표현으로 기술돼 취재원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특히 기사 내용 가운데 『원장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한 대목은 취재 기자가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양 호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비난의 당사자인 서산의료원장으로서 명예훼손과 더불어 직위 수행과 대외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中都日報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②(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